

#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

##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올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소개했다.

정부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였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을 늘렸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할 방침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든든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할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억원 초과자의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해 소득수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쌀·콩 추가

올해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쌀과 콩이 추가되고 받고정직불금이 해당 4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기존 16개 품목에서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도 기존 A4 크기에서 A3 크기로 확대했다.

현재 해당 40만원인 받고정직불금이 새해부터 45만원으로 정주여건이 어려운 조간불리직불금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쌀 등급 중 '비검사' 표시가 삭제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검사 표시 비율이 73.3%에 달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아 '미검사'를 삭제해 개선기로 한 것이다.

1월14일부터는 쌀 등급에 '특' '상' '보통' 등의 중 하

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했으나 6월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택배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의 검역체계를 강화한다.

탁송업자는 12월부터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시 수입검역 신고를 해야 한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면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지원에 집중하게 되고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을 금융지주가 금융사업을 맡게 된다.

## 7000만원 넘게 벌면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올해부터 7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정책모기지 이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잠재력 높은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창업 및 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대한 세제지원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7년 20대 금융 모습을 통해 서민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혜택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었던 정책모기지는 서민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행보다 1억원 낮아진 것이다.

연 7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 등과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017년부터 성장성을 평가해 적자를 기록했어도 성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을 변경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상장주관사에 게 실사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문 사모펀드(PEF) 제도가 도입된다.

출자가 이뤄진 날부터 2년 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율이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햇살론 대출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에게는 매년 0.3%, 최대 1.2%p 금리인하를 받게 된다.

##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 내진 설계 모든 주택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상청이 직접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게 됨에 따라 지진경보 시간이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한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에 따르면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지난 9월12일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일시대피소 5532곳과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조소 1536곳을 지정했다.

대피소의 위치도 다음, 카카오톡 등 민간공간정보서비스

를 통해 제공,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가갈 수 있도록 했다.

6층이상(기존 11층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2층에도 (기존 3층이상)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를 실시해 종전에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된다.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과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실시 등 현장역량도 강화한다.

제작된 책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안전처 누리집(www.mps.go.kr)에 게시해 국민과 재난관리 업무 관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0만원→12만원 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 파견 무료 지원)이 도서벽지와 여성안전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교육 횟수도 지난해 3600여회에서 올해에 5100여회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최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터 만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도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도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올해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해진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하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올해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

노후경유차를 새로운 차로 교체하거나,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소개했다.

노후 경유차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등록된 차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소유자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는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

치세 13만원 등이다.

노후 경유차 1대를 교체하면 신차 1대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기간은 한시적이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차를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면제 한도는 1대당 400만원이다.

올해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적용된다.

\*\* '새해 달라지는 것' 은 1월 9일자까지 지면을 통해 간헐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따뜻함과 정겨움이 가득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